

제 437 호

1974.3.26.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편집 : 문화공보실장 김진호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시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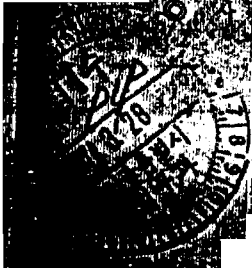
차례

담당	상무부장	법제지장	업무담당관	공보

- ◎ 조 제
 - 제 822 호 : 서울특별시동장보수조례중개정조례 3
 - 제 823 호 : 서울특별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 4
 - 제 824 호 : 서울특별시공한지신고에따른 재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4
- ◎ 규 칙
 - 제 1347 호 : 서울특별시립부녀복지관설치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 5
- ◎ 고 지
 - 제 29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일부변경및 지적승인 7
 - 제 30 호 :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과, 지적승인 8
- ◎ 공 고
 - 제 48 호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진흥사업지정업체
변경대체 지정공고 8
 - 제 49 호 : 창동추가로지구회정리사업지구환지계획인가 및
예정지 지정공고 9
 - 제 50 호 : 일당의주택지 조성사업완공공고 9
 - 제 52 호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
진흥사업지정공고 10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시보에 관심을 가지라.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서울특별시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동장보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1974. 3. 23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조례제 822 호

서울특별시동장보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동장보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 조 (초임급 확정) 동장의 초임급은
다음각호의 호봉으로 확정한다.

- 1. 인구 1만미만의 동장은 1호봉
- 2. 인구 1만이상 2만미만의 동장은 2호봉
- 3. 인구 2만이상의 동장은 3호봉

제 4 조중 "1년 6월"을 "1년"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74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 표 동 장 봉 급 표 (단위: 원)

구 분 호봉	본 봉	직 체 수 당	계
1	4,680	26,120	30,800
2	4,710	27,790	32,500
3	4,860	29,340	34,200
4	5,010	30,890	35,900
5	5,160	32,440	37,600
6	5,310	33,990	39,300
7	5,460	35,540	41,000
8	5,460	37,240	42,700
9	5,460	38,940	44,400
10	5,460	40,640	46,100
11	5,460	42,340	47,800
12	5,460	44,040	49,500
13	5,460	45,740	51,200
14	5,460	47,440	52,900
15	5,460	49,140	54,600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시세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시장
1974년 3월 23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 823 호

서울특별시시세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0조에 제 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㉑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 11조제 2항 및 제 16조제 2항에 의한 재산의 구분 및 범위에 관한 건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공한지물 소유자는 매년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기 개시일 30일전까지 공한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고기간을 정하여 미리 공고한후 이를 신고하게 할수있다.

이 조례는 197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정할 서울특별시공한지 신고에 따른 재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시장
1974년 3월 23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 824 호

서울특별시 공한지신고에 따른 재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 11조제 2항 및 제 16조제 2항에 의한 재산의 구분 및 범위에 관한 건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공한지(서울특별시 소재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그 소유자가 자진 신고하도록 하여 공한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신고된 공한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 7조제 2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의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공한지신고) 공한지물 소유자는 서울특별시시장의 공고에 응하여 신고요령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 3 조 (불균일 과세 대상) 제 1 조의 불균일 과세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공한지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 4 조 (경감율) 전조의 공한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 16 조 제 1 항 제 1 호 다목에 의하여 산정한 세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 5 조 (사무처리의 위임) 제 3 조의 규정에 의한 불균일 과세사무는 당해 과세 객체와 관련된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 6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시행기간) 이 조례는 다른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74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립부녀복지관 설치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청
1974년 3월 20일

◎ 서울특별시규칙 제 1347 호

서울특별시립부녀복지관 설치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립부녀복지관 설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 제 1 항중 제 1 호 및 제 2 호 문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울특별시립 근우회관
합 수 232 명
학 아 80 명
2. 서울특별시립 양지회관
합 수 204 명
학 아 80 명

제 2 조중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 3 항을 삭제한다.

② 학 아에 의한 지도와 부녀자를 위한 계몽 및 지도사업을 한다.

제 3 조 제 5 항중 "6개월"을 "1년"으로 한다.



제 4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4 조 (이용자의자격등) ①부지권을 이
용하고자 하는자는 다음각호에 해당
하는 자라야 한다.

1. 무의무탁한 직업여성
2. 간 16세이상 50세까지의 여성
으로서 신원이 확실하며 사상이 건
전한자
3. 주민등록증 또는 신원을 확인할

안한증명을 소지한자
②락아는 직업여성외의자니로 6세이하
인 아동에 한하여신말은 따로정하는
밖에 의한다
별지제 1호서식을 별지와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

별지제 1호서식

입 관 원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본 적					
현 주 소					
직 업		최종학력			
보호자성명		보호자와의관계			
합숙기간	197 . . . 부터 197 . . . 까지 (개월간)				
준수사항 서 약	1. 합숙기간중 기관의 제반규칙과 지시를 준수 이행하겠음. 2. 합숙기간중 기관의 제반시설을 손괴하였을때에는 소경의손해를 변상하겠음.				

첨부서류 :

1. 제직증명서 1부
2. 사 진 3매
3. 주민등록표 1부

위와같이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 . . .
원 인
전화번호

시 울 북 별 시 립 관 장 귀하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 29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일부변경 및 지적승인

1. 당시 관내도시계획시설 (도로) 을
도시계획법제 12조 및 제 13조 규
정과 건설부고시제 123호 (73.4.

4) 의 권한위임사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일부변경 및 지적승인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및 관할구청에 보관

가. 노 선 조 서

고시하였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도시계획과의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4. 3. 19.

서울특별시청

가. 노선조사실장

나. 관계도면별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소토	2		8	144	남가좌동258-7앞	남가좌동275-16앞	특정 일부변경 위치
변경	"	3		6	144	"	"	
기정	소토	3		6	378	중산동6-4	중산동7-1	경과지 중산동 7-1 131-3
변경	"	"		6	152	중산동산4-2	중산동131-47앞	
기정	소토	4		4	80	청파동2가9-24앞	청파동2가9-1앞	위치일부변경
변경	"	"		4	96	"	"	
기정	소토	3		6	274	사당동59-1	사당동43-17	위치일부변경
변경	"	"		6	274	"	"	
신설	소토	2		8	810	사당동200-7앞	상도동상도여중앞	

◎ 서울특별시 고시 제 30 호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과 지적승인

1.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과 지적승인을 다음과 같이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와 동법 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 제 123 호(73.4.4)에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조서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공사실에 비치하여 토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4. 3. 20.

서울특별시 장

위치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1	송실중고등학교	서대문구신사동 300-88	7,497명(24,740)㎡	
2	분일여자중학교	영등포구시흥동 55-19의 1 필지	4,427명(15,710)㎡	

별첨 :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시민공사실에 보관

공 고

◎ 서울특별시 공고 제 48 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생
산지경영체변경대체지정공고

중소기업 수출품생산 지경영체의

1. 변경 지정

변경사항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품생산지경영체 지정 및 자금지원
요령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
하고, 다음과 같이 변경 및 대체 지정공고한다.

1974. 3.

서울특별시 장

지정 번호	기업 명칭	대표자	소재지	수출 품명	지정 번호	기업 명칭	대표자	소재지	수출 품명
522	성한	윤희봉	동대문구워경 동 187-31	엘드스	498	한정사	윤석봉	영등포구철수 가 315-95	엘드스

지 정 위 소					대 제 지 정				
정 호	기업제명	대표자	소재지	수출 품명	지정 번호	기업제명	대표자	소재지	수출 품명
19	위 란 산 업 사	박만규	동대문구연무 동 1049-695	해 타	319	위 란 산 업 주 식 화 사	박만규	동대문구연무 동 1049-695	해 타

◎ 서울특별시 공고제 49 호

창동수가로지구회정리사업지
구획지제회인가및예정지지정

1. 창동수가로지구회정리 사업지구에
대단 환지제회를 토지구회정리사업
법제 47 조의 규정에 의거 별첨도
서와 같이 정하고 동법제 56 조 및
창동토지구회정리사업시행조례제 11
조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공고한다.

2.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사
용수익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에게 부여한다. 다만, 정지공사
이완로 또는 다른 사유로 인하여
환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는 토지
는 공사완로 및 다른사유가 해소
된 날부터 사용수익을 하게 한다.

3. 환지예정지, 지정서 및 예정도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 1
과와 도봉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

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게 보이게 한다.

4. 이 공고에 따른 서류송달은 별
도 토지소유자에게 발송될 것이나
수령하지 못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에게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1974. 3. 19.

서울특별시 광

◎ 서울특별시 공고제 50 호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완로공고

1. 서울특별시도시계획 36 호 (71.5.12)
로 실시계획인가된바 있는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의 준공을 도시계획
법제 85 조제 1 항 및 제 46 조제 3 항
의 규정에 진선부고시제 123 호 (73
4.4) 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공고
한다.

사 명

1974. 3.18

대천산 지방토목
배수지사무소 기
동구파견 근무를 명함.

개량 1과 지방토목
기사보

봉구파견 근무를 명함.

지하철 지방토목
건설본부 기

안구파견 근무를 명함.

지하철 지방토목
건설본부 기사보

서대문구파견 근무를 명함.

한전건설사업소 지방토목
기사보

영등포구파견 근무를 명함.

마포구 지방토목
기사보

도시계획과 파견근무를 해임함.

동대문 지방토목
수도사업소 기사보

영등포구파견 근무를 명함.

한전건설사업소 지방토목
건설본부 기사보

도봉구파견 근무를 명함.

서대문 지방토목
수도사업소 기사보

천호출장소파견 근무를 명함.

개량 2과 지방토목
기사보

양서출장소파견 근무를 명함.

지하철 지방토목
건설본부 기사보

영등출장소파견 근무를 명함.
토목과 지방토목 이종화
인명출장소파견 근무를 명함.
토목과 기사보 허경현

도시계획과파견 근무를 해제함.

영등포구 지방토목 한승익
건설소 기사보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심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74.1.6
(발령제 24 호) 전체처분을
확정함.

공무원교육원 행정사무관 이원중
교수부

대통령비서실 근무를 명함.

1974년 3월 18일

대통령

1974. 3.20

공무원교육원 행정사무관 김형두
교수부

공무원교육원교수부 근무를 명함.

성북구 지방행정사 양승현

회계과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지방행정사 차계봉
수도사업소 기사보

윤수 1과 근무를 명함.

입구 지방행정사 권모

서대문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P

서대문구 지방행정 수도사업소 주	김준기	74.3.20~3.30까지 공업진흥청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상역행정법" 파견 근무를 명함.
동원담당관실 지방행정 주사보	민문기	기전과 지방경기 노관
업무과 근무를 명함.		74.3.20~3.30까지 공업진흥청
성북구 지방행정 수도사업소 서	김규희	"상역행정법" 파견 근무를 명함.
동부병원 근무를 명함.		
사회과 지방행정 공무원교육실 근무를 명함.	황상하	○ 1974. 3. 22.
연로과 지방행정 시설관리과 근무를 명함.	김정일	용산구 지방행정 김재준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시설관리과 지방행정 사회과 근무를 명함.	추교신	중리사업소 지방경제사 박여용 지방공무원법제 65조의 2 제 1항 1호의 규정에 의거
환경과 지방행정 사회과 근무를 명함.	강정용	그 직위를 해제함. 중리사업소 지방경제사 김관수
상정과 지방행정 운수 2과 근무를 명함.	이승정	지방공무원법제 65조의 2 제 1항 1호의 규정에 의거
용산구 지방행정 수도사업소 주사보	이만용	그 직위를 해제함. 중리사업소 지방경제사 원
상정과 근무를 명함.		
연동포구 지방행정 주사보	하상운	지방공무원법제 65조의 2 제 1항 1호의 규정에 의거
북동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수도사업소 지방행정 주사보	신광우	그 직위를 해제함.
74.3.20~3.30까지 공업진흥청		○ 1974. 3. 23.
명함"과 근무를 명함.		관공과 지방행정
동부병원 행정주사	변영일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p>제 1 문구 지방행정 구 사 보 경 용 식 행정부관실 근무를 명함.</p>	<p>중기관리사업소 근무를 명함. 도 시 지방기계 가스사업소 기사보 이 승 호</p>
<p>제 2 문구 지방행정 구 사 보 유 삼 삼 행정부관실 근무를 명함.</p>	<p>중기관리사업소 근무를 명함. 도 용 구 지방기계 기사보 박 경 후</p>
<p>4. 3. 25.</p>	<p>중기관리사업소 근무를 명함. 시 부 지방기계 위생처리장 기사보 심 천 국</p>
<p>김 병 원 (약제과장 적두대리) 의하여 그직을 면함.</p>	<p>김 기 동 운수 3 과 근무를 명함. 수 도 지방기계 관리사업소 기사보 이 근 호</p>
<p>운 수 3 과 지방기계 기사</p>	<p>최 창 규 시 가스사업소 근무를 명함.</p>

서울특별시